

「평창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2년 8월 23일, 김성기 의원 발의
- 회부일자: 2022년 9월 15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77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2년 9월 15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김성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관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군수의 책무 (안 제3조)
- 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 (안 제4조)
- 불법촬영 예방사업 실시 및 사업 추진단체 지원 (안 제5조 ~ 6조)
- 특별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의 지정 (안 제7조)
- 실태 조사 및 신고체계 등 구축 (안 제8조 ~ 9조)
- 교육 및 홍보 (안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○ 본 조례안은

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○ 주요내용은

안 제4조에서는 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을

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

불법촬영 예방사업 실시 및 사업추진단체 지원을 각각 규정하였으며,

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

실태 조사 및 신고체계 등의 구축과 관련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.

○ 최근 보편적인 스마트폰 보급과 변형 카메라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해 불법촬영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.

따라서, 평창군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누구나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본 조례는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.

○ 또한, 불법 촬영 피해가 발생하는 장소가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

목욕실,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, 기존 지자체 조례시행범위인 '공중화장실'에서 '다중이용시설'로 확대 규정하였습니다.

○ 관련 입법례로

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14개 지자체가 있고 도 내 4개 시·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.

(강릉, 삼척, 영월, 화천)

○ 검토결과,

상위법 위반 등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붙임 평창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1부.